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Release date: 7 May 2021

No. 2021-04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재무보고 고려사항

Key points

최근 공급자 금융(또는 역팩토링) 약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IFRS 해석위원회는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재무보고 고려사항을 다루는 안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약정을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운전자본, 차입약정비율, 순부채 및 기타 공시사항과 현금흐름 표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1. 주요 사항

공급자 금융(supplier financing)은 종종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당사자인 재화의 공급자, 구매자, 금융제공자(이하 '은행')가 포함됩니다. 은행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매입채무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공급자가 매입채무의 일반적인 만기보다 일찍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또는 구매자가 대금을 더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매입채무(구매자의)와 매출채권(공급자의)이 발생합니다.
2. 구매자는 매입채무를 '확인'합니다. 즉, 금액, 만기일,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 및 은행과 합의한 일자(약정에 따라 매입채무의 만기 또는 그 후)까지 매입채무를 결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공급자의 매출채권은 은행과의 계약으로 대체됩니다.
4. 공급자는 원래 만기일 또는 그 전에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을 받습니다.
5.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청구서의 만기일 또는 그 후에 은행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IFRIC 안건 결정 – 공급자 금융 약정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1) 관련 청구서가 공급자 금융의 일부인 경우, 수취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할 부채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2)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부채의 표시, 현금흐름의 표시, 공급자 금융 약정 관련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공급자 금융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건 결정은 언제 적용됩니까?

안건 결정은 공식적인 시행일이 없습니다.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이 종종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기업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변경은 적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기업 특유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고, 공시하며, 비교표시되는 정보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소급적용되는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요구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향후 가능한 IASB의 기준 제정

잠정적인 안건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하여 착수할 수 있는 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IASB는 향후 회의에서 기준 제정에 착수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2.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주요 재무보고 고려사항

전반적인 고려사항

구매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공급자 금융 약정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합니다. [[IAS 1 문단 15](#)].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이 충분히 다르거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IAS 1 문단 29, 54, 55, 57, 58](#)]. 또한 기업은 중요한 경우 이러한 약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공시와 판단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양적 및 질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합니다.

PwC 견해

재무정보 이용자는 공급자 금융 약정의 규모와 주요 조건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정에 대한 중요성 판단 시 약정의 규모와 주요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재무보고에 이를 투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세부 고려사항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채무를 제거해야 합니까?
2.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3. 약정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4.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까?

이 지침의 3 번 ~ 6 번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매입채무의 제거

IFRIC 안건 결정

금융부채의 제거

기업은 IFRS 9 '금융상품'의 제거 요건을 적용하여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제거 여부와 시기를 결정합니다.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부채를 표시할 때 IAS 1 을 적용합니다.

구매자에게 중요한 이슈는 기존의 부채(즉,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은행에 대한 새로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매입채무가 제거되면 구매자는

-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구매자는 매입채무 제거 여부와 시기를 IFRS 9 의 제거 요건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가 제거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금융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은 IAS 1 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4 번 참조).

IFRS 9 에 따라 금융부채(매입채무 또는 기타)는 소멸한 경우(즉,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IFRS 9 문단 3.3.1](#)].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부채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 법적 절차 또는 채권자에 의해 부채(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은 경우

[[IFRS 9 App B 문단 B3.3.1](#)].

또한 IFRS 9 에 따라 기존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IFRS 9 문단 3.3.2](#)].

따라서 기업은 공급자 금융 약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새로운 약정으로 인식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자 금융 약정은 채무의 경제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회계적인 관점에서 최초의 의무가 소멸되고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재무상태표 표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상태표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IAS 1 문단 54](#)는 기업이 다른 금융부채와 별도로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다른 금융 부채와 성격이나 기능이 충분히 다르므로 별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IAS 1 문단 57](#)). [IAS 1 문단 55](#)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문단 54에 나열된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을 포함) 개별 항목을 추가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어떻게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a.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내에 표시;
- b. 다른 금융 부채 내에 표시; 또는
- c.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된 개별 항목으로 표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1\(a\)](#)는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IAS 1 문단 70](#)은 '매입채무 등과 같은 일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a.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될 부채이고,
- b.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청구서를 받았고,
- c.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경우

[IAS 1 문단 29](#)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아니라면,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문단 57](#)은 항목(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IAS 1을 적용하여 표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a. 해당 부채가 매입채무를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 및 기능을 가질 때만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의 일부로 표시 - 예: 해당 부채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경우
- b.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구분 표시. 부채를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로 통합할지를 포함하여)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업은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를 고려합니다 ([IAS 1 문단 55 및 58](#)).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별도로 표시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a. 약정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는지 여부
- b. 약정의 일부인 부채 조건이 약정의 일부가 아닌 기업의 매입채무의 조건과 다른 정도.

[IFRS 9 문단 3.3.1 또는 3.3.2](#)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최초 부채가 소멸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은행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매입채무'가 아닌 은행 차입금 또는 다른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최초 부채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자는 [IAS 1 문단 54 및 55](#)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내의 표시가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AS 1의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거래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도록 선택된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항목은 함께 표시해야 하고, 상이한 항목을 함께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효과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FAQ 3.1](#)에 포함된 질문은 매입채무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성격 또는 기능으로 인해 별도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금흐름표 표시

IFRIC 안건 결정

현금흐름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a.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 b.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역팩토링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 지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해석위원회는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관련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채를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된 운전자본의 일부인 거래 또는 기타 채무로 간주하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유출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관련 부채가 차입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입채무 또는 기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로 표시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됩니다 ([IAS 7 문단 43](#)). 결과적으로,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로 청구서가 인수 될 때 기업에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해당 현금흐름을 표시합니다. 금융 거래에서 기업에 대해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합니다 ([IAS 7 문단 43](#)).

안건 결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이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5.1 –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에서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6. 공시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IC 안건 결정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31](#)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IFRS 7은 유동성 위험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흔히 유동성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 a. 다양한 공급자가 아닌 하나의 금융기관에 기업의 부채가 집중됩니다.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거래상대방의 집중은 기업이 단일 당사자에게 일시에 유의적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b. 기업이 연장된 지급 조건에 의존하게 되거나, 기업의 공급자가 역팩토링 약정에 따른 조기지급에 익숙해지거나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역팩토링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업은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기업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IFRS 7 문단 33 ~ 35](#)는 유동성 위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위험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방침 및 절차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노출된 유동성 위험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이 자료가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유동성 위험 노출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정보 포함) 그리고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7의 문단 39와 B11F는 기업이 유동성 위험 공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요구사항과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PwC 견해

유동성 위험 공시는 공급자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공급자 금융 약정의 지속적인 효용에 대한 구매자의 의존정도도 고려해야합니다. 구매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공급자 금융 약정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동성 위험 공시에 대한 추가 지침과 논의는 [PwC MoA 47 장 문단 107 ~ 11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AS 1 추가 공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주석을 추가 공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a.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된 부채 및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데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 중 하나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한다([IAS 1 문단 122](#)).

- b. 역팩토링 약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IAS 1 문단 112](#)) 재무제표에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중요성 판단에는 양적 및 질적 고려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AS 7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역 공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IAS 7 의 문단 44A](#)는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부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7. 공급 업체 자금 조달 사례

역팩토링 및 공급자 금융 약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공급자 금융 약정에 IFRS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 7.1 – 공급자 금융 약정의 예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